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32361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
담당변호사 이승현

피 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이경택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01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그래픽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키즈카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금채권

- 1) 원고는 2021. 3. 9. E 유한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865,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D의 대표이사 F은 위 채무를 8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 2) E은 2021. 5. 10.부터 2022. 2. 22.까지 원고에게 위 1)항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현재 원고의 D와 F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원금 572,019,951원이 남아 있다.3) D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와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D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으며, D의 거래처를 이어받아 D가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들은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D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무 잔액 572,019,9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E과 D는 2020. 6.경부터 주식회사 G 등의 투자를 받아 방송용 실사 및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원고는 E과 D로부터 위 프로그램 제작을 하청받았다.

나) 피고 B의 대표이사 H,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I와 J은 모두 종전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D에 근무할 당시 H은 그래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J은 키즈카페 사업을 기획하였다. 피고 B의 직원 K, L, M 및 피고 C의 직원 N도 모두 종전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I와 J은 각각 피고 B의 또 다른 대표이사 O의 조카와 아들이고, I와 J은 사촌지간이다.

라) D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2021년 당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등의 매출거래처 및 주식회사 T, U,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주식회사 X, Y, Z,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법무사 AC 사무소,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AF세무회계 등의 매입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1. 12. 8. 설립된 피고 B 및 2021. 6. 21. 설립된 피고 C도 2021년 내지 2022년에 위와 같이 D의 거래처였던 업체들을 각각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로 두고 거래하였다. 특히 D의 P에 대한 2021년 매출액은 1,148,560,381원¹⁾ 인데, 피고 B의 P에 대한 2022. 1.부터 2022. 10.까지의 매출액은 906,865,745원²⁾ 으로서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83.6%(= 906,865,745원 / 1,084,268,945원 × 10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D의 P에 대한 2021년 매출액 중 10개월분 상당액인 957,133,650원(= 1,148,560,381원 × 10 / 12)과 유사하다.

마) D의 대표이사이자 E의 대표이사인 F은 2022. 2. 7.경 AG에게 ‘D는 밑 빠진 독이었는데 그것을 살리려고 물기까지 털어 넣었지만 2년쯤 전에 정리했어야 했다’, ‘사업을 하다가 돌이켜 보면 괜찮았던 시점이 있는데, 그때 내가 대표자가 아닌 깨끗한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에 뭔가를 피신시키는 작업을 해놓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피고 C 책상 옆에 D 자리가 있고, 그 옆에 피고 B H, M가 앉아 있고, 그 옆에 내가 앉아 있고, 피고 C L 자리가 있다’, ‘피고 C J 지분의 명의는 다 J으로 돼 있지만, 실제 지분은 J, 나, I 대표가 나눠서 백 계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안 썼다’, ‘피고 B은 더더군다나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흥세무서와 양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설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은 D가 추진하던 사업을 일부 계속하는 관계로 D의 주요 거래처였던 업체들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당시 D의 주요 사업이 피고들이 현재 계속하고 있는 해당 사업밖에 없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D의 2021년 매출액은 3,817,845,801원³⁾ 인데, 피고 B의 2022. 1.부터 2022. 10.까지의 매출액은 1,084,268,945원이고, 피고 C의 2022. 1.부터 2022. 11.까지의 매출액은 14,330,000원이다),

피고들이 D로부터 주요 자산을 이전받았다거나 영업상 거래관계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D의 채무 중 피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AH 주식회사에 대한 렌트비 채무'가 유일한데, 이는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I가 D 명의로 렌트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피고 C 명의로 승계하여 렌트비 채무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D의 영업과는 무관하다).

나) 피고 B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H과 O가 각각 40%, 60%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의 주식은 공동대표이사인 I와 J이 각각 75%, 25%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그 밖에 D의 지배주주가 피고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D와 피고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D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피고들이 D와 같은 유형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D와 피고들의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라) D와 피고들의 법인 소재지는 각각 다르고, 원고의 주장처럼 D와 피고들이 사무실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박준범, 판사 김병일

1) 2021년 상반기 767,484,520원 + 2021년 하반기 381,075,861원

2) 2022년 1월 43.,107,900원 + 2022년 2월 (29,568,000원 + 50,737,500원) + 2022년 3월 (17,638,500원 + 17,638,500원 + 146,338,500원) + 2022년 4월 35.,585,000원 + 2022년 5월 (18,491,000원 + 61,110,441원) + 2022년 6월 (39,424,000원 + 18,491,000원 + 115,568,200원) + 2022년 7월 80.8,500원 + 2022년 8월 (1,226,500원 + 105,430,754원) + 2022년 9월 41.,002,500원 + 2022년 10월 (29,900,000원 + 134,798,950원)

3) 2021년 상반기 2,788,089,160원 + 2021년 하반기 1,029,756,641원

